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734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0년 8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3조).
- 다.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상환금·차입금·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4조).
- 라. 기금은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여유자금의 예치·예탁,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5조).

- 마. 시장은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둠(안 제6조).
- 바.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사. 시장은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 (2020. 7. 2. ~ 7. 2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 지원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기금개요

- 기 금 명 : (가칭)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 기금분류 : 융자성(목적상), 공무원복지(성질상), 직접관리(관리방식)
- 기금용도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및 기타 주거안정 사업
- 조성재원 : 융자금 미회수 채권,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
- 설치년도 : 2021년

운용계획

재원구성	수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 회수금 ▶ 일반회계 전입금 ▶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지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 기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 운용 경비
운용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기준 연간 약 180억원*(±α) 규모 운용 - 사업비 규모는 최근 2년간('18~'19) 전세자금 지원금 신청 수요(평균 194억), 전세가 상향 추세, 1인당 개인한도 현실화(증액)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80억원으로 하되, - 일반회계 재원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확대('21년 130억, '22년 155억, '23년 이후 180억) ※ 연간 운용규모는 신청수요, 당해연도 상환금 수입규모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α)
조성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0억원 ('21년~'26년) ※ 기융자 회수금 266억, 일반회계 전입금 461억, 이자수입 23억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시 재정예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비를 기금으로 편성(전출), 융자성 사업으로 재원이 소멸되지 않음 → 재원변경만 있을 뿐 시 재정규모 변동은 없음 ▶ 상환되는 융자금을 당해연도에 즉시 사용 가능 → 재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 행정국은 무주택 공무원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주거안정 사업의 규모 확대 및 기금설치에 대한 직원들의 개선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추진배경을 밝히고 있음.

※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해 경상북도(「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전라북도 순창군(「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다른 시도 운영사례]

① 경상북도 : '93년 기금설치, '19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419억원

- 전세자금(최대 5천만원, 15년 상환) 외 주택 매입자금(최대 1억원, 20년 상환) 지원

※ 이 외에도 관내 정주민구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서 기금 설치·운영중

※ 2020년 8월 기준 서울시는 16개 기금을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거안정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서울 등 수도권권의 주택 매매·전세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설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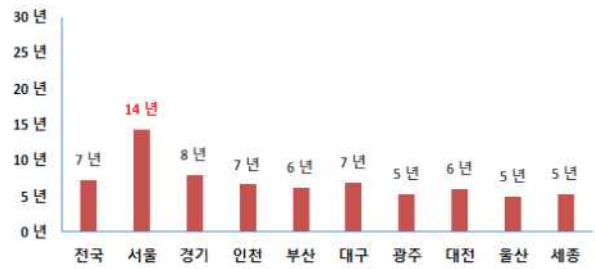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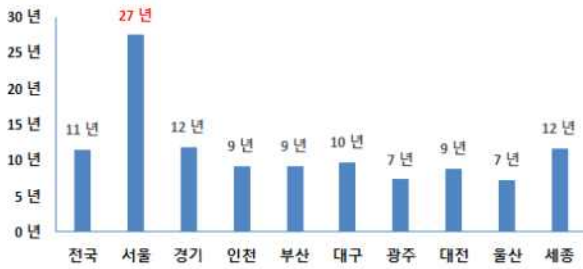
7.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원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

나. 주택 전세금의 융자

※ 2020년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8.8억)·전세가(4.6억)는 전국의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서울시 공무원이 공무원이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7년이, 전세보증금 마련은 14년이 소요됨.

< 공무원 연소득 대비 평균 아파트 매매가 비 > < 공무원 연소득 대비 평균 아파트 전세가 비 >



- 다만,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취질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행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운영의 한계점과 기금 운용의 필요성,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적정성,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 공무원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설치)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함.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제4조(기금의 조성)	-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용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제5조(기금의 용도)	-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용자,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등을 기금의 용도로 정함.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둠.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위해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둠.
제8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총괄 및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회 개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용자업무 위탁·대행 등)	- 기금의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고,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정함.
부칙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1) 기금의 설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동 규정은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 상황과 관계없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전세가 급등, 근무지 변경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재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금설치의 장점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기금은 재원이 소멸되지 않는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금 상환시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재사용이 가능하여 전세자금 운용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의회의 예산심의권 약화의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의회의 통제권 밖에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일반회계)와 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기금
설치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필요시
예산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예산요구 →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 지방의회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 예산부서 협의·조정 → 지방의회 심의·의결
집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목적성 차원의 자율성·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주요항목(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u>

- 또한, 관련법령(「지방자치법」)에서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주거안정 자금 운영이 일반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

- 안 제3조는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한 최대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어, 존속기한 설정의 범위는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존속기한 5년이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해소 및 운영을 위한 적정한 연한의 설정인지 여부와 존속기한의 연장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할 수 있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 존속기간연장 심의절차 : 기금관리부서⇒기금총괄관리관 의견⇒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

입법사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동 제정안에서는 존속기한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유효기간 및 존속기한 등 시기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입법체계상 조문 이동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금의 조성(안 제4조)

- 안 제4조는 주거안정 기금조성을 위한 자원 조달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 관련 법령에서는 기금 조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통상적인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차입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구성됨.
- 행정국은 기융자회수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이자수입 등을 통해 5년('21년~'26년)동안 7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주거안정기금 조성목표와 자원조성 방안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기금의 조성 목표액 미달성에 따른 대안마련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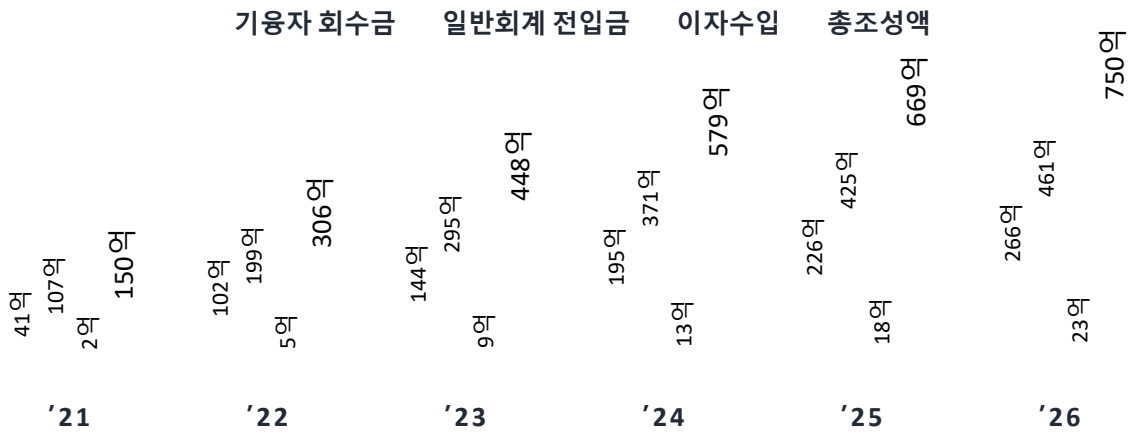
〈 조성목표 및 재원조성 방안 〉

【 조성목표 】 750억원 (조성기간 : '21년 ~ '26년)

※ 사업비 연 130~180억 규모, 이자율 현 1% 유지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누계)	150	306	447	579	669	750
① 기용자 회수금	41	102	143	195	226	266
② 일반회계 전입금	107	199	295	371	425	461
③ 융자금 이자수입	2	5	9	13	18	23



① 기용자 회수금(전세융자금 지원금 미상환 채권 회수금) **266억원**

- 일반회계에서 기 대출('16~'20년)된 지원금 회수액으로, 기금 설치 이후 '21년부터 '26년까지 기금으로 수입처리

② 일반회계 전입금 **461억원**

- 융자금 회수금 감안해 연차별로 107억원~36억원 규모로 출연
 - ▶ 일반회계 전입금 = 사업비 - 전년도 이월액 - (융자금 회수금 × 55%)
 - ※ 융자금 회수금은 최근 5년간('15~'18년) 상환추이와 하반기 전세자금 지원금 지원시기(8월 이후)등을 감안해 편성액의 55%만 반영

- '27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운용 가능

③ 전세자금 이자수입(이자율 1% 가정) **23억원**

4)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용자,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밝히고 있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용자
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지원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기금의 용도가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는 무주택 공무원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매년 2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경직성에 따라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지원대상자, 지원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 바, 기금 조성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무주택 공무원(신혼부부 공무원, 신규 공무원 포함)
※ 그룹별 선정 : 일반 50% 신규 15%, 신혼 30%, 다자녀(3자녀이상) 및 1인가구 5%
- 선정시기 : 상·하반기 2회 (전세계약서 등 입증서류 확인 후 수시 지원)
- 지원금액 : 최고 1억원, 이자 연 1.0%(17. 7월~ / 보증보험 요율 0.496%)
 - 전세보증금의 50% 이내(보증금 4.4억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100% 지원)
 - ※ 단, 세대원 6인 이상은 보증금 5억원 이하, 1인 가구는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채권확보 : 보증보험가입 또는 채권양도 설정
※ 채권양도는 SH 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설정 가능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20년 예산 : 13,000백만원
※ '07~'10년 50억, '11년 40억, '12년 30억, '13~'15년 40억, '16~'17년 38억, '18년 58억, '19년 68억

[연도별 전세자금 예산,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 '20. 8. 20. 기준)

연도	예산	집행률	신청현황		선정인원	지원현황		경쟁률 (신청인원/ 선정인원)	지원비율 (지원금액/ 신청금액)
			신청인원	신청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85,200,000	87.0%	2,823	170,516,645	1,564	1,316	71,908,400	1.8:1	46.6
'20년	13,000,000	69.9%	305	23,086,000	179	132	9,081,000	1.7:1	39.3
(하반기)	6,500,000	39.7%	123	9,091,000	94	39	2,581,000	1.3:1	71.5
(상반기)	6,500,000	100.0%	182	13,995,000	85	93	6,500,000	2.1:1	46.4
'19년	6,800,000	100.0%	261	20,196,495	86	86	6,800,000	4.1:1	33.7
'18년	5,800,000	100.0%	226	18,593,000	81	87	5,800,000	2.6:1	31.2
'17년	3,800,000	100.0%	85	5,048,000	69	69	3,800,000	1.2:1	75.3
'16년	3,800,000	100.0%	129	7,474,000	70	68	3,800,000	1.8:1	50.8
'15년	4,000,000	64.9%	113	5,813,000	97	59	2,594,400	1.2:1	44.6
'14년	4,000,000	93.4%	230	12,503,000	72	75	3,736,200	3.2:1	29.9
'13년	4,000,000	89.4%	136	6,969,000	87	74	3,576,300	1.6:1	51.3
'12년	3,000,000	99.7%	192	10,386,000	52	57	2,991,500	3.7:1	28.8
'11년	4,000,000	100.0%	124	6,322,000	76	74	3,999,200	1.6:1	63.3
'10년	5,000,000	80.8%	135	7,463,150	118	79	4,040,500	1.7:1	54.1
'09년	5,000,000	67.7%	137	5,559,000	96	81	3,382,500	1.7:1	60.8
'08년	5,000,000	92.2%	221	8,959,000	141	114	4,610,500	1.6:1	51.5
'07년	5,000,000	92.3%	224	9,059,000	161	129	4,615,300	1.4:1	50.9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더해 그룹별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일 반	신 혼	신 규	다자녀	1인 가구
비율	100%	50%	30%	15%	5%	5%
지원한도	130,000	58,500	39,000	19,500	6,500	6,500

① 기본배점(100점)

구 분		배점 기준	
일반 · 신혼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 무주택기간 (45)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 부양가족 수 (25)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신규	· 부양가족 수 100	- 1명당 20점 / 5명 이상 100점 만점	
다자녀	· 자녀 수 100	- 1명당 20점 / 5명 이상 100점 만점	
1인 가구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 무주택기간 (70)	- 만 1년당 4점 / 15년 이상 70점 만점	

※ 부양가족 :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② 가·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15점	-	정 직
10점	•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감 봉
5점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1~3점	• 대통령표창(훈·포장 포함) 3점 • 국무총리표창 2점 • 시장(장관)표창 1점	

※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의 경우는 복수 감점 처리됨

5)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인력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인력개발과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안 제6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지방회계법」 및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 주체의 체계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 소속하에 위원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7조의 기금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써, 기금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본 조례에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안 제10조)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령으로 설치 의무화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 재정담당 부서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

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함.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함.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다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안제8조제1항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정확한 위원의 숫자가 불분명한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통상위원회의 경우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규정하는 점도 고려한 구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강제 사항은 아니나, 통합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셋째, 동 제정안에는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바, 해당 규정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8) 용자업무 위탁·대행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11조(용자업무 위탁·대행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행정국은 전세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대출 및 여수신 업무 등에 대해 전문성과 편리성을 갖춘 금융기관에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기금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